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건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희 배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기준재정 산정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정도 반영 및 페널티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감사원 권고사항인 재정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 제9조의2 조문내용 중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 지출하거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 지출 등을 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